

## 4. 土地收用法施行令中改正令(案)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92-9號 1992. 1. 29

### 1. 개정이유

토지수용법의 개정(1991. 12. 31. 법률 제4483호)에 따라 그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아울러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 골자

가.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업자로서의 정부투자기관과 공공단체의 범위를 정함.

나.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채부동산소유자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소재지 구·시·읍·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·시·읍·면지역 및 당해 토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, 주민등록을 한 경우도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토지로 함.

다.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비업무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을 기

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가 비업무용 부동산 등으로 판정하는 토지로 함.

라. 부채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보상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채권으로 보상하게 되는 바 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일정금액을 토지에 대한 보상금 1억원으로 함.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2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(참조 : 토지국장, 전화번호 500-2849, 2851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